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4항”을 “법 제6조제6항”으로
한다.

제29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“매출액”을 “매출액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
판매업자가 의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해당 품목류별 매출액을 의
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.)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: 2022년 7월 1일
별표 1 제1호자목(2) 중 “법 제22조제2항”을 “법 제22조제1항”으로 한다.
별표 4 제1호사목 중 “유전자재조합기술”을 “유전자변형기술”로, “유전
자재조합관련규정”을 “유전자변형관련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아목 중
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”을 “유전자변형 표시대상”으로, “유전자재조합
식품이라”를 “유전자변형식품이라”로 하며, 같은 호 더목1) 중 “법 제22
조제2항”을 “법 제2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9 II 제3호 중 “변경허거”를 “변경허가”로 하고, 같은 II 라목제15
호8) 중 “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”을 “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”으로
하며, 같은 II 라목제15호8)가) 중 “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.	제7조의2(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 ----- ----- 법 제6조제4항에 ----- ----- ----- 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2(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) ① (생략)	제29조의2(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	2. ----- -----
가.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: 202	가. ----- 매출액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

0년 6월 1일	<u>판매업자가 의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해당 품목류별 매출액을 의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.)</u> - --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5조의2(규제의 재검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5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6의2.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: 2022년 7월 1일</u>
7. ~ 9. (생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
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454